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28
----------	------------

제안년월일 : 2021년 9월 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사업 추진 방식의 행정효율성 및 사업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 및 서울시의 사무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제도”를 “제도”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디지털성범죄 관련 <u>법·제도</u> 개선</p> <p>5.·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이 경우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성폭력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u></p> <p>② (생략)</p> <p>제7조(사업) ① <u>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u></p>	<p>제4조(계획의 수립) ① ----- ----- ----- -----.</p> <p>1. ~ 3. (원안과 같음)</p> <p>4. ----- <u>제도</u> ----- --</p> <p>5.·6. (원안과 같음)</p> <p>②·③ (원안과 같음)</p> <p>제5조(실태조사) ① ----- ----- ----- --. <u><후단 삭제></u></p> <p>② (원안과 같음)</p> <p>제7조(사업) <u>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u></p>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

제7조-----

-----.

②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구나 외국

의 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